

사료공장 HACCP 중심의 사료관리법 개정사항



안 규 정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사료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동물용의약품을 사료로 제조·공급할 경우 사료관리법에 의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사료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 사료이용가능 식품·동물의약품 : 설탕, 소금, 효소제, 생균제 등

둘째, 사료제조업자가 휴·폐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사실상 휴·폐업중인 자에게 지방세 또는 면허세가 고지되는 사례 등 민원발생의 소지 해소하고

※ 유사입법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24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6조

셋째, 현재 농림부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 등의 근거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됨으로서 재량행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근거조항 마련

사료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첫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요건은 『민법』·『상법』 등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업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의 지정업무의 지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심사와 기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하였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사료제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사료공장 HACCP, 사료의 안정성관련사항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중 미설치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규제완화하고, 사료제조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에 관한 신고절차, 제조업 승계절차를 신설하였고,

둘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및 취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여부에 관한 심사, 교육·훈련 등 신설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의 지정 및 교부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하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닐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면 지정서를 6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업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월간의 생산 실적 사본,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5.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 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심사는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에 정기심사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90일 이전에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담당기관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지정심사 660천원, 정기심사 330천원, 지정서 재발급심사 100천원

셋째,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사료검정업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방법, 국내 사료검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검정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검정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주요개정 내용은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변경하여 지정한 것이다. 